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6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5월 30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행정환경 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 등을 위해 총정원 변동 없이
직렬·직급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한강사업추진단 신설로 ‘한강사업추진단장’(3급) 1명 및 그 산하에
‘한강사업총괄부장’(4급) 1명, ‘한강전략사업부장’(4급) 1명 정원 신설
- (사업소) 일반직 5급이하 $\Delta 3 \rightarrow 3\text{급} + 1, 4\text{급} + 2$
- 나. 행정환경 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등을 위해 연구직(10명)
및 지도직(1명)의 정원 조정
- (연구직) 407명 \rightarrow 408명(연구관 +10명 연구사 $\Delta 9$ 명)
※ 일반직 5급이하 $\Delta 1$
- (지도직) 24명 \rightarrow 25명(지도관 +1) ※ 일반직 5급이하 $\Delta 1$
- 다. 서울대공원의 사육운영직 퇴직 및 임기제 계약 만료에 따른 인력
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으로 정원 조정(7명)
- (사업소) 일반직 5급이하 $\Delta 7 \rightarrow$ 전문경력관(동물사육) +7
- 라.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의 고압가스
안전관리자 선임 위해 일반직을 전문경력관으로 정원 조정(1명)
- (사업소) 일반직 5급이하 $\Delta 1 \rightarrow$ 전문경력관(고압가스안전관리) +1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
(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: 해당없음

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관련 규정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협의사항:
협의 완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('23. 5. 19. ~ 5. 23.) 결과: 의견 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박효원(☎2133-6729)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(조례 제8695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의 표 중 일반직 계란, 3급란, 4급란, 5급 이하 소계란, 전문경력관 소계란, 연구직 계란, 연구관란, 연구사란, 지도직계란, 지도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일반직 계	10,715					
-------	--------	--	--	--	--	--

3급	18	8		1	9	
----	----	---	--	---	---	--

4급	258	153	19	8	70	8
----	-----	-----	----	---	----	---

5급 이하 소계	10,235					
----------	--------	--	--	--	--	--

전문경력관 소계	157					
----------	-----	--	--	--	--	--

연구직 계	408					
-------	-----	--	--	--	--	--

연구관	73	8		41	24	
-----	----	---	--	----	----	--

연구사	335					
-----	-----	--	--	--	--	--

지도직 계	25					
-------	----	--	--	--	--	--

지도관	3			3		
-----	---	--	--	---	--	--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 [서울특별시조례 제8695호 포함]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4]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계</th> <th>본 청</th> <th>의회 사무처</th> <th>직속 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합 의 제 행정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11,73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7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 략)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10,71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7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 략)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7</td> <td>8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8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7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 략)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256</td> <td>153</td> <td>19</td> <td>8</td> <td>68</td> <td>8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7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 략)</td> </tr> <tr> <td>5급 이하 소계</td> <td>10,248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 <td>149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7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 략)</td> </tr> <tr> <td>연구직 계</td> <td>40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관</td> <td>63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34</td> <td>24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사</td> <td>344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지도직 계</td> <td>24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지도관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7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 략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계	본 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 의 제 행정기관	총 계	11,730						(생 략)							일반직 계	10,717						(생 략)							3급	17	8		1	8		(생 략)							4급	256	153	19	8	68	8	(생 략)							5급 이하 소계	10,248						전문경력관 소계	149						(생 략)							연구직 계	407						연구관	63	5		34	24		연구사	344						지도직 계	24						지도관	2			2			(생 략)							<p>[별표 4] ----- ----- -----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계</th> <th>본 청</th> <th>의회 사무처</th> <th>직속 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합 의 제 행정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11,73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7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10,71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7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8</td> <td>8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9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7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258</td> <td>153</td> <td>19</td> <td>8</td> <td>70</td> <td>8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7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5급 이하 소계</td> <td>10,23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 <td>15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7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연구직 계</td> <td>408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관</td> <td>73</td> <td>8</td> <td></td> <td>41</td> <td>24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사</td> <td>33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지도직 계</td> <td>2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지도관</td> <td>3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3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7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계	본 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 의 제 행정기관	총 계	11,730						(현행과 같음)							일반직 계	10,715						(현행과 같음)							3급	18	8		1	9		(현행과 같음)							4급	258	153	19	8	70	8	(현행과 같음)							5급 이하 소계	10,235						전문경력관 소계	157						(현행과 같음)							연구직 계	408						연구관	73	8		41	24		연구사	335						지도직 계	25						지도관	3			3			(현행과 같음)						
구 분	계	본 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 의 제 행정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11,7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생 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10,71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생 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7	8		1	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생 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256	153	19	8	68	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생 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이하 소계	10,24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4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생 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 계	40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관	63	5		34	2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	34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직 계	2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관	2		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생 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계	본 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 의 제 행정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11,7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10,71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8	8		1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258	153	19	8	70	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이하 소계	10,23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5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 계	40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관	73	8		41	2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	33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직 계	2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관	3		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비용추계서"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·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·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·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발의·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**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(이하 "비용"이라 한다)에 관하여 추계**(이하 "비용추계"라 한다)한 자료를 말한다.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**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**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**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**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총 정원 변동이 없어,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이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박효원 (☎ 2133-6729)